

의안번호	2204427
의 퇴 인	문진석의원
회 답 일	2024. 10. 23.
추계번호	24B412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4조제1호의2 신설(비용보조)	<u>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음</u> 1의2. <u>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홍수 대응 및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하천의 하천공사</u>	재량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4조제1호의2 신설(비용보조)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비용보조—지방하천의 하천공사(안 제64조제1호의2 신설)

□ 현행법 제64조¹⁾는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재해복구를 위

1) 법 제64조(비용보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1.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시행령 제76조(비용보조의 범위) ① 법 제6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재해복구를 위한 하천공사
2. 지방하천의 정비공사
3. 저류지·홍수조절지 및 방수로의 설치공사
4. 삭제

② 법 제64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말한다.

한 하천공사,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홍수 대응 및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하천의 하천공사의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용보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환경부에 따르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공사의 추진계획, 보조대상 하천공사 및 국고보조율 등 구체적인 자료 등이 필요함

- 그러나 현시점에서 지방하천공사의 추진계획, 보조대상 하천공사, 국고보조율 등 추계에 필요한 자료 및 지원 기준이 부재하며, 보조대상은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지방하천 하천공사로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지역맞춤 통합하천사업’ 대상지를 선정·발표하였으나,³⁾ 2023년에 재정당국의 사업 검토과정에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함

- 대상지 22곳 (국가하천 18곳, 지방하천 4곳)

※ [참고자료]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선도사업 대상지 현황

2) 안 제64조(비용보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1의2.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홍수 대응 및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3) 환경부 보도자료,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 선정—환경부, 국가하천 18곳과 지방하천 4곳 선도사업 선정,” 2022.12.22.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선도사업 대상지 현황

(환경부 제출자료)⁴⁾

□ 선도사업 대상지 (22개소)

국국가하천 지방하천

하천명	지방자치단체	사업명(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명칭)
곡교천(국)	충청남도(아산)	곡교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금강(국)+정안천(지방)	충청남도(공주시)	금강 공주지구 통합하천사업
금강(국)	세종특별자치시	비단강(금강 세종시구간) 통합하천사업
금호강(국)	대구광역시	금호강 통합하천사업
낙동강(국)+부전천(지방)	부산광역시	부산형 도시명품 통합하천사업
낙동강(국)	경상북도(문경시)	낙동강 문경지구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전천(국)	대전광역시	대전천 통합하천사업
만경강(국)	전라북도(완주군)	만경강 완주지구 통합하천사업
미호강(국)+무심천(국)	충청북도(청주시)	미호강 및 무심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밀양강(국)	경상남도(밀양)	밀양강 모례~가곡지구 통합하천사업
산본천(지방)	경기도(군포시)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승기천(지방)	인천광역시	승기천 통합하천사업
안성천(국)	경기도(평택시)	안성천 평택지구 통합하천사업
여천천(지방)	울산광역시	도시하천(여천천) 관광·문화벨트 구축사업
영산강(국)	전라남도(담양군)	영산강 관방지구 통합하천사업
영산강(국)	전라남도(나주)	영산강 나주지구 통합하천사업
요천(국)	전라북도(남원시)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창릉천(지방)	경기도(고양시)	창릉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태화강(국)	울산광역시	태화강 언양지구 통합하천사업
평창강(국)	강원도(영월군)	한강 덕포지구, 평창강 청령포지구 통합하천사업
형산강(국)	경북(포항, 경주)	新형산강 프로젝트
황룡강(국)	광주광역시	황룡강 황룡지구 통합하천사업

※ 하천명을 기준으로 '가나다'순으로 기재, 사업비는 기본구상 마련 과정에서 산정할 예정

4) 환경부 보도자료,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 선정—환경부, 국가하천 18곳과 지방하천 4곳 선도사업 선정,” 2022.12.22.

[illegible]